

KCGS Report

제12권 3호 | 통권 제147호 | 2022. 3.

ESG 동향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사회적 이슈, 규제 동향 및 시사점
금융기관 보유 자산에 대한 탄소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PCAF의 The Standard 가이드라인 소개
청소년 및 고령층 포용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Global News

유럽 집행위원회(EC),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발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관련 공시 강화 및 표준안 발표

KCGS Report 제12권 3호

발행일 : 2022년 3월 31일

발행인 : 심인숙

발행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TEL : 02-3775-3339 www.cgs.or.kr

제작 : 경성문화사 02-786-2999

등록NO : 영등포, 라00532

※ 이 보고서의 견해 및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귀속되며,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상기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해당 보고서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표시 바랍니다.

KCGS Report

제12권 3호 | 2022. 3.

● ESG 동향

-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사회적 이슈, 규제 동향 및 시사점 2
- 금융기관 보유 자산에 대한 탄소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PCAF의 The Standard 가이드라인 소개 11
- - 청소년 및 고령층 포용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16

Global News

- 유럽 집행위원회(EC),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발표 32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관련 공시 강화 및 표준안 발표 35

ESG 동향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사회적 이슈, 규제 동향 및 시사점

정승연 *

- ▶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소비시장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급성장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 또한 크게 활성화 됨
- ▶ 온라인 플랫폼은 사업 구조의 특성상 독점적 지위 남용과 소비자 보호,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어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국내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고 있음
- ▶ 따라서 지속가능한 플랫폼 운영을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대응하고 플랫폼 이용자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일 것임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플랫폼 운영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소비자 및 플랫폼 종사자와의 직접적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이해 관계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사회적 이슈 및 규제 동향과 이러한 동향이 플랫폼 운영 기업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함

온라인 플랫폼 및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정의

- 온라인 플랫폼은 둘 이상의 집단의 이용자들 간에 재화 등의 거래, 정보 교환 등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의미함¹⁾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KCGS 사업본부 ESG 평가팀 선임연구원, 02-6951-3704, syjeong@cgs.or.kr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재화 등에 관한 정보교환을 매개하는 서비스, 소비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간에 재화 등의 거래를 위한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²⁾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행위 주요 사례

- 온라인 플랫폼의 부당한 행위는 크게 플랫폼 운영 기업의 독점적 지위에서 기인하는 것과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³⁾
- 플랫폼 운영 기업의 독점적 지위에서 기인하는 행위로는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 경쟁사 진입 방해 행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임
 -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자사 상품·서비스 검색 결과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와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음⁴⁾⁵⁾
 -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모바일 기기제조사로 하여금 경쟁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함⁶⁾
 - 배달앱을 운영하면서 타사 앱이나 직접 전화로 주문할 때 자사 앱보다 더 싼 가격에 음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실시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은 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함⁷⁾
-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기인하는 행위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나 공통적으로는 거래 과정이나 재화의 유통 과정에서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용약관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유형임
 - 개인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면책되도록 함⁸⁾
 -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부정확한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⁹⁾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3) 보험연구원, 2021.09., "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과제: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4)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0.10.06.

5)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0.09.04.

6)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1.09.14.

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0.06.02.

8)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1.11.26.

9)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1.11.26.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국내·외 규제 동향

-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만을 대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며, 소비자와의 거래 관계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플랫폼 입점업체와의 거래 관계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주로 적용받고 있음
-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계약 형태가 다양하고 플랫폼 운영 기업의 사용자성과 종사자의 근로자성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로서의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은 미비함
- 다만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플랫폼 종사자 권리 침해, 소비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 구체적인 지침 마련, 기존 법률 개정, 신규 법안 발의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2022년 5월 10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율규제 중심의 정책을 제안함
 -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하여서는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플랫폼 시장 진입장벽 완화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남용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¹⁰⁾
 - 이해관계자와의 공정한 계약과 상생을 위한 정책으로는 상생형 기금 조성, 자율규제기구 수립,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함 (<표 1> 참조)¹¹⁾
 - 이 외에도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법제화 할 것을 제안함¹²⁾

10) 한겨레, 2022.01.24. "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 질의에 답한 대선 후보 공약 총정리Ⅲ"

11) 윤석열 공약위키, "플랫폼 | 공정과 상생", <https://www.wikiyon.com/56e3188e-273d-4e00-bfae-3620514fc21b>

12) 국민의 힘, 2022,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표 1〉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윤석열 정부 공약

공약 분야	공약	주요 내용	실행 방안
플랫폼 공정과 상생	공정과 상생이 확보되는 플랫폼경제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추진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상권의 Win-Win 달성	온라인 유통의 발달에 따른 오프라인 지역상권의 개편 및 발전을 위해 온오프라인 상생형 기금의 일정기간 자율출연을 유도하고 온라인 진입규제는 완화 및 유예 추진 참여업체로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금을 지역내 오프라인 상권조정 및 활성화 사업지원, 배송기사 및 이용사업자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하여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증진 및 상생추진	플랫폼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하여 선부른 규제 도입은 지양하되 주요 플랫폼, 소비자 단체, 이용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연합적 논의기구 및 자율규제 틀을 설립 추진 - 민간 자율기구 또는 민간 공동기구 형태로 추진하고, 실효성 담보 위해 목표설정, 거버넌스 등 제도적 기반마련 과정에는 정부가 적극 참여
		플랫폼 내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유도를 통해 이용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	플랫폼 스스로 이용사업자의 불만 및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및 운영 유도

○ 그 외 최종 소비자, 플랫폼 이용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발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표 2〉 참조)

〈표 2〉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개정 및 발의 법안

법률명	현황	목적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¹³⁾	2021.03.05. 입법예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책임 구체화를 위한 기존 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플랫폼 내 입점업체 혹은 개인간 거래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신원정보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함 검색결과 제공 시 광고 구분 표시 및 검색순위 주요 결정 기준을 표시하도록 함 맞춤형 광고 제공 사실 고지 및 소비자가 일반 광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중개업자의 경우에도 리콜명령 대상자의 리콜의무 이행에 협조해야할 의무를 명시함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중개거래와 직매입 상품을 분리하여 표시하도록 함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계약당사자에게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거래과정의 중요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13)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4)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1.1.25., "「온라인 플랫폼 공경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15)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https://opinion.lawmaking.go.kr/mob/nsmLmSts/out/2113269/detailR>

16)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https://opinion.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8908/detailR>

법률명	현황	목적	주요 내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¹⁴⁾	2021.01.26. 국무회의 통과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중개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보급 및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함 • 계약 내용 변경, 서비스의 일부 제한 및 중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업자가 해당 내용을 사전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해야함 • 부당한 경제상 이익 제공, 거래조건 설정,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함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¹⁵⁾	2021.11.1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플랫폼 산업의 발달로 새로운 일자리가 확산함에 따라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하여 보호하고,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관계법률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를 주장하는 플랫폼 운영 사업자나 이용 사업자가 증명 • 플랫폼 운영 사업자나 이용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이용계약 기간 및 갱신·변경·해지 절차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플랫폼 종사자가 요청하면 노무의 배정 및 보수,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 방법과 기준 및 결과 활용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 •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도 차별적 처우, 이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 등 금지 •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개인정보 및 사생활 등을 보호 및 플랫폼 종사자가 사회보험을 적용받게 된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이행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¹⁶⁾	2021.03.18.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 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이용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 • 계약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나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 수행 요구 금지 •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 종사자에게 부당하게 부담하는 행위 금지 •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적정하게 결정하고, 보수의 지급기준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어도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공 등

- 해외에서는 EU와 일본, 미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리 보호,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 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거나 마련 중에 있음 (<표 2> 참조)

〈표 3〉 EU, 일본,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

법률	구분	내용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¹⁷⁾	국가	• EU
	시행일	• 2020. 07. 12.
	취지	•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환경 조성 • 예측 가능하고 혁신 친화적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환경 마련 •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이용약관 마련 시 준수해야하는 규정 제시
	적용 범위	• 온라인 플랫폼 및 온라인 검색 엔진 서비스 제공자
	주요 내용	• 검색순위 제공 방식,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노출 방식,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타 플랫폼 이용 시 제한되는 사항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 •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과 범위 명시 •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또는 연 매출액 1천만 유로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및 관련 정보 공개
The Digital Markets Act ¹⁸⁾	국가	• EU
	시행일	• 2021.12.15. 유럽의회 1차 검토
	취지	• 온라인 플랫폼 산업 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소비자의 제품 및 서비스 선택권 보장
	적용 범위	• EU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Gatekeeper”로 정의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 또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대상
	주요 내용	• Gatekeeper로 정의된 기업을 대상으로 이하의 행위 제한 - 개인정보보호 남용 행위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는 행위 - 광고, 마케팅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행위
The Digital Services Act ¹⁹⁾	국가	• EU
	시행일	• 2022.01.20. 유럽의회 1차 검토
	취지	• 온라인 중개서비스 시장의 기능이 적절하게 구현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 마련

17) Regulation (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Text with EEA relevance), 2020.07.12.

18)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ntestable and Fair Markets in the Digital Sector (Digital Markets Act), 2020.12.15.

19)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Digital Services Act)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2020.12.15.

20) Act on Improving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Digital Platforms, 2021.02.01.

21)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11.26.,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고찰”

22) 한국개발연구원, 2021.08.12.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23) David Cicilline, 2021.06.11., “House Lawmakers Release Anti-Monopoly Agenda for “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

24) Reuters, 2021.06.15., “House antitrust subcommittee unveils five big tech antitrust bills”

법률	구분	내용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국가에 본사가 위치해 있거나, EU 국가 거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온라인 중개사업자, 클라우드와 같은 웹호스팅 서비스 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셜 미디어, 마켓플레이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정의 불법적 콘텐츠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의무 부여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정보 관리 강화 의무 부여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적절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의무 부여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²⁰⁾²¹⁾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02.01.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에게 자주적이며 적극적인 대처 요구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도모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 (아래 요건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생활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디지털 플랫폼 이용 집중도 이용사업자의 보호 필요성 타 규제, 시책의 대응 상황 매출, 이용자 수 등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약관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약관 변경에 대한 사전적 정보 제공 의무 명시 불만 해결 채널,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등 공정한 플랫폼 운영을 위한 시스템과 체계 구축 의무 명시 매년 사업 개요, 고충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정보 공개 현황, 공정한 플랫폼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현황, 자기진단 현황이 담긴 보고서 제출 	
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 ²²⁾²³⁾²⁴⁾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06.11. 발의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5개 법안 패키지 발의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월간 사용자 수 5,000만명 이상 혹은 사업자 수 10만명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 연매출 또는 시가총액 6,000달러를 초과하는 플랫폼 사업자 “핵심 거래 상대방(Critical trading partner)”에 해당하는 플랫폼 사업자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빅테크 기업의 자사우대 성격의 차별적 행위 규율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사 상품 우대, 경쟁사 상품을 불리하게 만들 능력/유인을 제공하는 사업 영위 금지 서비스 전환 활성화를 통한 경쟁과 호환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랫폼 간 데이터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 플랫폼 경쟁과 기획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대 플랫폼이 타 사업자를 인수하는 것을 견제 	

시사점

- 앞서 살펴본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부당행위와 규제 동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음
 - 첫 번째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정책 혹은 기구를 수립하여 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효율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자율규제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에 비해 산업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산업 내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 가능한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가짐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자신들이 준수해야 할 정책과 규정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플랫폼 이용 사업자, 최종 소비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음
 - 플랫폼 운영 기업과의 관계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 독점적 지위를 지닌 플랫폼 운영 기업은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의 관계에 있어 단순히 거래 중개의 역할을 넘어 우월적 지위를 지닐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할 필요 있음
 - 특히 계약 내용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부당한 거래 조건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함
 - 최종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는 소비자가 재화를 선택함에 있어 활용하는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책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 플랫폼 운영 기업은 플랫폼 내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해당 재화의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의 소지가 있는 재화의 유통 가능성을 최소화 할 필요 있음
 - 또한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가 플랫폼 운영 기업을 거래 당사자로 오인할 수 있음에 따라 자사의 거래 관여도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책임소재를 명확히 파악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플랫폼 종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상품화와 인권 침해 이슈에 주목해야 함
 - 플랫폼 운영 기업과 플랫폼 노동자는 기존의 전통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으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플랫폼 운영 기업의 지휘, 감독 역할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 플랫폼 운영 기업은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권리 침해 등의 이슈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플랫폼 운영 기업의 역할이 단순히 중개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맺고 있음에 따라 여러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분쟁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이해관계자별로 부여되는 책임과 역할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운영 기업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브랜드 평판 하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기구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와 소통해야 함

금융기관 보유 자산에 대한 탄소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PCAF의 The Standard 가이드라인 소개

오윤진*

- ▶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탄소 중립을 위한 일련의 대응 활동들이 점차 대내외적으로 요구되기 시작함
- ▶ PCAF는 금융기관의 탄소 중립을 위한 전제 조건인 '금융기관 보유 자산에 대한 탄소 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글로벌 지침서인 The standard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금융기관의 보유 자산 유형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을 제시함
- ▶ 금융기관들의 자발적인 탄소 중립 선언이 이어지고 있음에, 금융기관 보유 자산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론에 대한 글로벌 표준 가이드라인과 이를 제정한 PCAF의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서론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와 그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탄소 중립에 대한 논의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투영한 탄소 중립 선언이 이어지고 있음
 -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EU와 영국은 1990년 대비 각각 55%, 68% 감축을, 미국은 2005년 대비 50% 이상의 감축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설정하는 등,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은 탄소 중립을 위하여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일제히 상향하여 공표하고 있음
- 이처럼, 탄소 중립과 이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글로벌 차원에서 높아짐에 따라, 금융기관들 또한 탄소 중립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등, 금융기관의 탄소 중립을 위한 일련의 대응 활동들이 점차 대내외적으로 요구되기 시작함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KCGS 사업본부 선임연구원, 02-6951-3706, shining5@cgs.or.kr

-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기관의 탄소 중립을 위한 전제 조건인 ‘금융기관 보유 자산에 대한 탄소 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글로벌 표준 지침서인 PCAF의 The standard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도입 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PCAF의 The Standard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PCAF 개요)** PCAF는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의 약자로, 대출, 투자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론과 그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PCAF는 2015년 네덜란드의 금융기관들이 모여 창설한 비정부 협력 기구로서, 현재는 전 세계 각 권역의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 기구로 성장하였으며, 2020년 11월에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에 관한 지침서(The Standard 가이드라인)를 공개한 바 있음
- PCAF는 금융기관의 탄소 중립을 위한 선행 준비사항들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을 위한 The Standard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게 됨
 - PCAF는 The Standard 가이드라인의 주요 사용 대상이 상업은행, 투자은행, 개발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라고 밝히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이라면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현재 전 세계 232개 금융기관의 약 63조 6000억 달러에 이르는 금융자산이 PCAF가 제공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에 참여하고 있음
 -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DGB금융그룹, JB금융그룹, BNK금융그룹, IBK기업은행, 한화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상 10개 기관이 PCAF에 참여하고 있음
- **(The Standard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가이드라인은 금융기관의 자산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분류 자산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할 수 있음
- 배출원 및 산정방법론을 기준으로 하여, 가이드라인은 금융자산을 채권(listed equity and corporate bonds), 대출(business loans and unlisted equity), 프로젝트파이낸스(project finance), 부동산(commercial real estate), 모기지(mortgages), 자동차 대출(motor vehicle loans)로 분류하여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공식을 제시함 <그림 2 참고>

- 금융자산 유형별로 적용되는 공식들은 기본적으로 <그림 1>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산식의 형태(기본형)를 따름
- 기본 산정 계산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자산 온실가스 배출량은, 1) 해당 금융자산의 총 투자액(자기자본 + 타인자본)과 금융기관의 투자 잔액을 각각 분모와 분자에 대입하여 기여율(Attribution factor)을 도출하고, 여기에 2) 투자받은 사업 혹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곱하여 산출됨 <그림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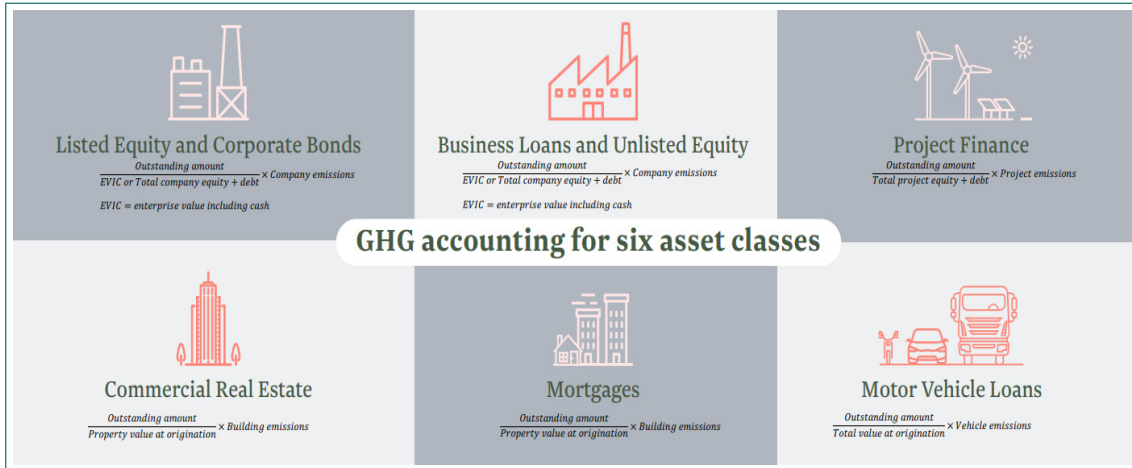
[그림 1] 금융자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본 계산식

$$\text{Financed emissions} = \sum_i \text{Attribution factor}_i \times \text{Emissions}_i \quad (\text{with } i = \text{borrower or investee})$$

$$\text{Attribution factor}_i = \frac{\text{Outstanding amount}_i}{\text{Total equity} + \text{debt}_i}$$

출처 : PCAF, The standard 가이드라인

[그림 2] 금융자산 6대 분류 및 유형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산식



출처 : PCAF, The standard 가이드라인

- 유형별 금융자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있어서,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대출과 채권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과 모기지의 경우에는 투자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이 이루어짐
- 프로젝트파이낸스의 경우 해당 투자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동차 대출의 경우 투자 대상이 된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산정 기준으로서 활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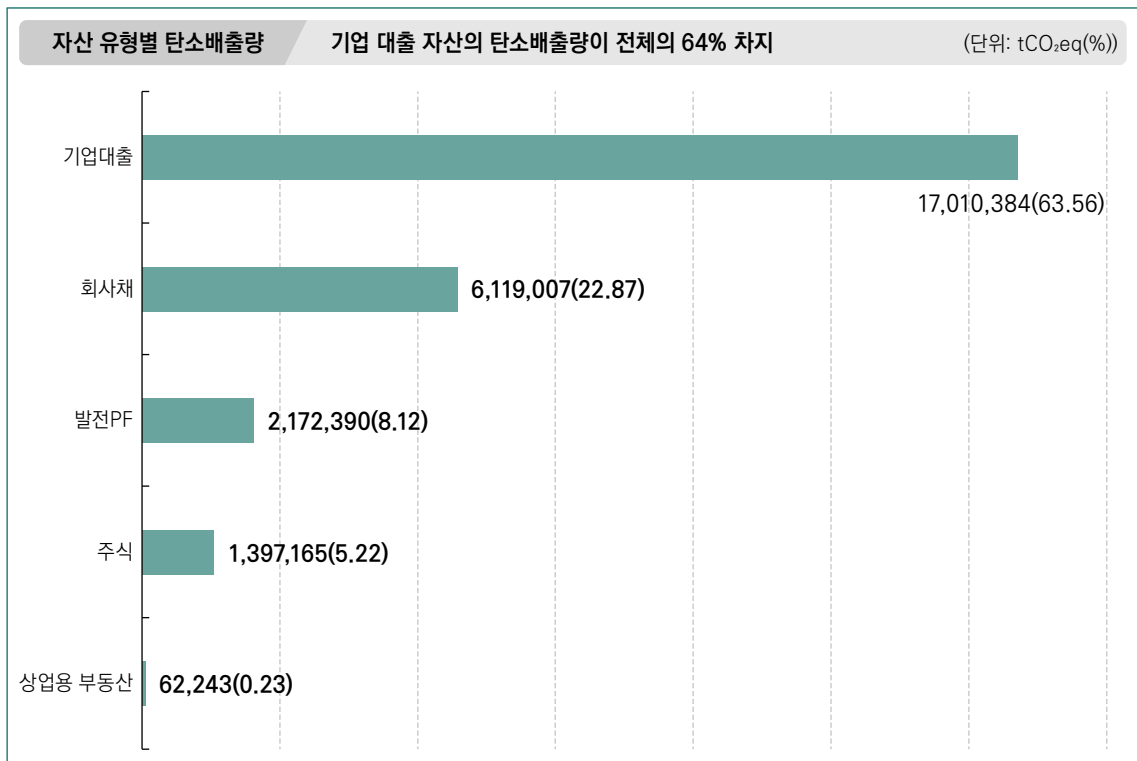
국내 주요 금융기관 도입 사례

- PCAF 방법론을 적용한 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Financed Emission) 산출

- (KB금융그룹의 사례) 2021년 7월, KB금융그룹은 탄소 중립을 위하여 국내 금융회사 최초로 PCAF 방법론을 적용한 자산 포트폴리오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공개함
 - KB금융그룹은 2021년 3월 PCAF에 가입하였으며, 7월에는 PCAF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의 방법론이 적용된 금융자산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 등 탄소 중립을 지향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줌

- KB금융그룹은 PCAF의 The Standard 가이드라인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보유 자산 및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출된 연간 총 배출량은 약 2,676만 tCO₂eq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참고>
 - 전체 포트폴리오 배출량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금융자산은 기업대출로, 약 64%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배출량의 약 91%(기업대출, 회사채, 주식)가 투자 대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KB금융그룹의 자산 포트폴리오 온실가스 배출량



출처 : KB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신한금융그룹의 사례)** 2022년 3월, 신한금융그룹은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금융자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 측정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였다고 발표함
 - “금융배출량 측정 시스템”은 PCAF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고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회사가 보유한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정교하게 산출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한금융그룹은 6개 산업군, 약 230조 원의 금융자산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였으며, 산업별/고객별/자산별/계약 만기별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함
 - 시스템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된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자산 포트폴리오 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게 됨
 - 신한금융그룹은 금융배출량 측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그룹사별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할 예정이며, 그룹의 중장기 탄소 중립 금융 전략인 ‘Zero Carbon Drive’의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결론

- 탄소 중립은 시대적 과제와도 같은 것이나 이를 추진, 이행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한 새로운 형태의 규제로서 인식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요인이자 경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 향후 금융기관들은 탄소 중립과 관련한 대외적인 흐름과 그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민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산 포트폴리오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는 것을 기후 대응의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여야 함
- 금융기관들의 자발적인 탄소 중립 선언이 이어지고 있음에, 금융기관 보유 자산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론에 대한 글로벌 표준 가이드라인과 이를 제정한 PCAF의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별 탄소 배출 감축 관리 및 탄소 중립 선언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기업과 자산, 사업 등의 탄소 배출 감축에 영향을 끼치면서 사회 전반으로 탄소 중립 참여를 확산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향후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 및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PCAF의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기업이 금융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점차 확산될 것이기에, 기업들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사전에 인식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청소년 및 고령층 포용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양희원*

- ▶ 금융환경이 디지털화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디지털금융 기술 접근성이 떨어지는 청소년 및 고령층에 대한 금융소외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구조적인 이유로 시중은행에 비해서도 청소년 및 고령층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
- ▶ 하지만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이 극복할 수 있다면 고객 외연 확장을 통해 성장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고령층 대상 포용금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함
- ▶ 다만, 청소년 및 고령층 대상 포용금융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이나 단기적 인센티브 보다 장기적인 기업의 발전을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전체적인 지배구조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이런 성과와 결과물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등에 공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서론 :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배경과 세대별 금융서비스 접근성 차이

- 인터넷전문은행의 탄생 배경 - 금융시장의 메기 역할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금융시장의 메기 역할을 지향하고 있음

〈표 1〉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보도자료에 기재된 금융위원장 발언 요지

케이뱅크 ¹⁾	카카오뱅크 ²⁾	토스뱅크 ³⁾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업계획 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금융시장 내 활발한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산업 발전에도 기여해야할 것을 강조	하반기 즈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간에, 또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 간에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KCGS 사업본부 ESG 평가팀 연구원, 미국공인회계사(State of Washington), 02-6951-3713, hwyang@cgs.or.kr

- 1) <https://www.fsc.go.kr/no010101/72484?srchCtgr=&curPage=3&srchKey=sj&srchText=%EC%9D%B8%ED%84%B0%EB%84%B7%EC%A0%84%EB%AC%B8%EC%9D%80%ED%96%89&srchBeginDt=&srchEndDt=>,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썬케이뱅크 은행(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 인가" (2016.12.15.)
- 2) <https://www.fsc.go.kr/no010101/72666?srchCtgr=&curPage=&srchKey=sj&srchText=%EC%9D%80%ED%96%89%EC%97%85+%EC%9D%B8%EA%B0%80&srchBeginDt=&srchEndDt=>,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한국카카오은행(주)에 대한 은행업 인가" (2017.04.05.)
- 3) <https://www.fsc.go.kr/no010101/76050?srchCtgr=&curPage=1&srchKey=sj&srchText=%EC%9D%B8%ED%84%B0%EB%84%B7%EC%A0%84%EB%AC%B8%EC%9D%80%ED%96%89&srchBeginDt=&srchEndDt=>,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토스뱅크(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 인가" (2021.06.09.)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인가 목적대로 서민금융인 중금리대출을 활성화시킴.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에 접근이 가능한 고객에게는 사실상 송금 수수료를 철폐시킴으로써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함. 더불어, 금융시장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전체적인 효율성이 증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실제로 2021년 5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인터넷전문은행은 연간 은행권 중금리대출 신규공급액의 70% 이상을 공급⁴⁾하였으며, 토스에서 2021년 “모든 이용자에게 송금 수수료 평생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는 발표⁵⁾를 하며 송금 수수료를 철폐함
- 인터넷전문은행 - 세대별 금융서비스 접근성에 큰 차이
- 하지만, 청소년 및 고령층 등 금융소외층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에 따른 혜택을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 2021년 8월 기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연령별 이용 현황⁶⁾을 보면 20대 미만 고객은 케이뱅크가 96,696명으로 1.5%, 카카오뱅크가 421,317명으로 2.8%에 불과했으며, 70세 이상 고객은 케이뱅크가 26,948명으로 0.4%, 카카오뱅크가 78,403명으로 0.5%에 불과하였음
 - 이에 관해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경제적 확대에 준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⁷⁾할 정도이지만, 청소년 및 고령층은 사실상 송금 수수료를 여전히 부담하여야 하는 등 디지털금융 혜택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도시 지역 20~40대 직장인들은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무료로 송금을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나, 농촌 지역 80대 이상 고령층들은 여전히 오프라인 창구에 방문하여 송금에 필요한 수수료를 내야만 하는 실정임. 또한, 14세 미만 청소년층은 계좌 개설시 비대면으로 인증을 해야 하므로 오프라인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계좌개설은 법정 보호자 동의 등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4) 혁신적 포용금융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 금융위원회 (2021.5.)

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024880i>, 한경 경제, “토스의 파격...”송금 수수료 평생 무료”(2021.08.02.)

6) <http://kpenews.com/View.aspx?No=2069745>, 한국정경신문, “60대 이상 고령층, 인터넷은행 이용률 타 연령층 대비 낮아”(2021.10.05.)

7)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511>, 이코리아 “[국감] 디지털금융의 그늘, 금융권 고령자 외면”(2021.10.05.)

본론 1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 현황

-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과 법적 지위
 - 인터넷전문은행은 특별법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약칭: 인터넷전문은행법)」에 근거하여 「은행법」이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규제 조건을 가지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있음
 - 가장 대표적인 특례 기준은 최저자본금을 지방은행과 같은 수준인 250억 원⁸⁾으로 하는 것과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 한도를 시중은행의 4%⁹⁾보다 30% 높은 34%로 완화하는 것이 있음
 - 이런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제정·개정 이유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제공을 통한 포용금융·은행 간 경쟁 촉진을 통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의 목적을 위해 설립이 인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1]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개정 이유 (일부발췌)

- ◇ 제정이유

이러한 배경 하에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여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단축을 해소**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 ◇ 주요내용
 - 나.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함(제4조).
 - 다.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 인터넷전문은행 운영 일반 현황
 -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총 3개가 인가되었으며, 2016년~2017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연달아 인가된 이후 2021년 토스뱅크가 제3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가되었음
 -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중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은행은 비상장임
 - 카카오뱅크는 분기별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고 있으며, 케이뱅크는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음
 - ※ 토스뱅크도 감사보고서 공시 대상이나 2021년 6월 인가되어 공시된 자료가 없음
 - 한편,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은행업으로 분류되어 금융사 지배구조법 전부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며, 동법 제22조에 따른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발행 의무를 짐
 - ※ 토스뱅크도 연차보고서 작성 의무가 있으나 2021년 6월 인가되어 공시된 자료가 없음

8)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2항제1호
 9) 은행법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표 2〉 인터넷전문은행 운영 일반 현황

구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인가일	2016.12.14.	2017.04.05.	2021.06.09.
상장 여부	비상장	상장	비상장
시가총액	약 7조 원 (장외가격 기준)	약 22조 원	약 15조 원 (모회사 장외가격 기준)
총자산 (2020년 결산 기준)	4.3조 원	26.6조 원	-

본론 2 :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 한계점

□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 배경

-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 혜택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적은 규제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음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 특성상 인건비나 임대료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비교해 고정비용이 매우 낮으며, 인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긴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초기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 우위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을 보여옴

〈표 3〉 은행별 업무용고정자산 및 비율

구분	항목	2021.12.	2020.12.	2019.12.	2018.12.
시중은행	업무용고정자산비율	10.60	11.17	12.07	12.23
	업무용고정자산	14,555,442	14,699,515	15,126,214	14,651,268
지방은행	업무용고정자산비율	11.75	12.11	12.14	12.52
	업무용고정자산	2,234,075	2,293,873	2,304,028	2,308,629
인터넷전문은행	업무용고정자산비율	1.66	2.48	3.09	1.46
	업무용고정자산	116,192	81,408	56,005	19,216

출처: 은행연합회 은행통계정보시스템, 단위: %, 백만 원

- 하지만, 앞으로는 아래의 이유로 그동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둔화할 여지가 있음

① 시중은행의 디지털 추격

- 4대 은행 신년사에서 공통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화두로 제시할 만큼 시중은행도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시중은행은 점포영업망이라는 비대칭 우위와 인터넷전문은행에 비해 우월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앱 편의성 측면에서 빠르게 인터넷전문은행을 따라 잡고 있음

〈표 4〉 4대 금융지주 신년사 중 디지털전환 관련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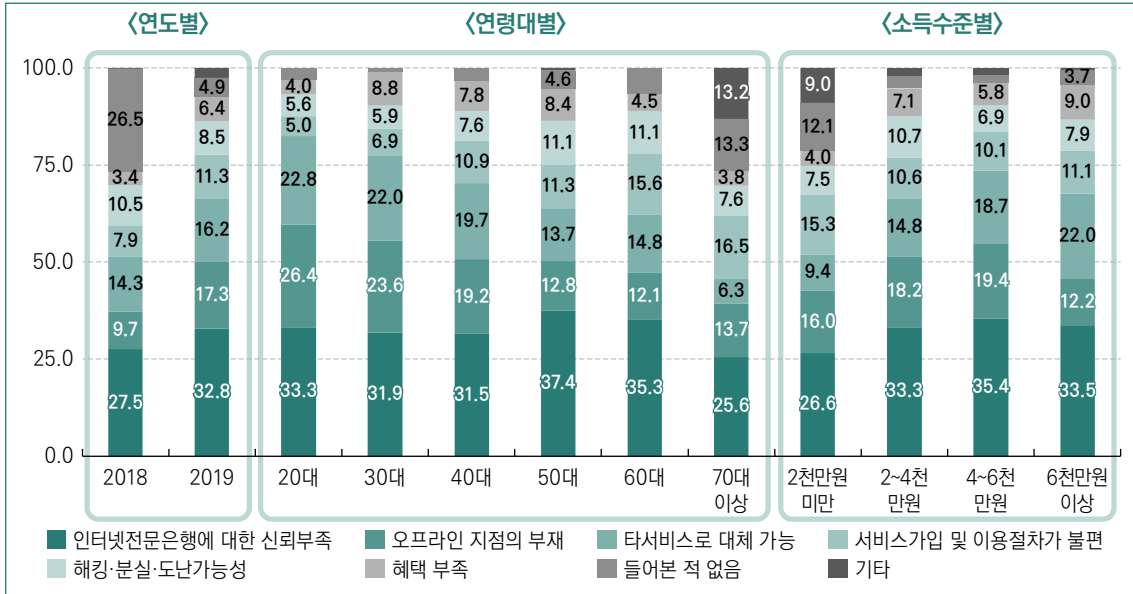
구분	디지털전환 관련 발언
KB금융그룹	<p>“KB금융그룹도 디지털을 통해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High Quality’, ‘High Speed’, ‘Low Cost’를 통해 고객들이 믿고 찾는 KB를 만들어 갑시다.”</p> <p>“IT, 디지털 부문은 지속적인 인재 확보와 채용방식 다변화를 통해 핵심 인재 육성에 앞장서 나갑시다.”</p>
신한금융그룹	<p>“인터넷 은행과 빅테크 계열 금융사들의 새로운 시도가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고객은 이제 금융사의 규모와 수익이 아닌 경험의 가치에 움직이고 있는 것”</p> <p>“‘신한WAY 2.0’을 바탕으로 신한만의 고객 경험을 만들자. 그룹사의 디지털 플랫폼 전반을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 운영해 빅테크,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에서 당당히 앞서 나가자”</p>
하나금융그룹	<p>“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수많은 변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제는 경쟁의 대상이 누구인지 불분명할 정도로 업의 경계가 사라졌다”</p> <p>“디지털 전환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그룹의 디지털 핵심기반부터 재설계해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p>
우리금융그룹	<p>“디지털 기반 종합금융그룹 체계 완성’을 올해의 경영목표로 수립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경영전략을 추진하겠다”</p> <p>“그룹 차원에서 MZ세대 특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전 세대에 걸친 고객들이 일상에서 우리의 플랫폼을 가장 먼저 떠올리도록 만들겠다. 또 올해는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테크 기업들과 겨뤄야 할 서비스들이 본격화되는 만큼, 우리만의 디지털 초혁신 서비스로 새로운 고객경험을 제공하자”</p>

② 고객 외연 확장의 한계

- 인터넷전문은행의 주 고객층은 상당수가 이미 인터넷전문은행 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간편송금 등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사용 중으로 디지털금융 서비스 경험이 없는 신규 고객 유치는 어려움.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타 금융 플랫폼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고객을 유치해오는 수평적인 고객 이동이 없이는 고객 수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2020년 발표한 한국은행 자료¹⁰⁾에 따르면,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조사집단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5% 미만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2018년 조사 당시의 26.5%에 비해 대폭 축소된 것으로 2022년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지도는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측됨

10) [지급결제조사자료 2020-2]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0.03.10.)

[자료 2]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바일 뱅킹서비스 미이용 이유



출처 : 한국은행, 단위 : %

- 하지만, 높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20~60대 층에서는 타 서비스로 대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13.7%~22.8%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고객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아닌 타 금융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금융 니즈를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음

③ 과점적 지위 약화

- 제3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가 2021년 6월 출범함으로써 기존 2개 인터넷전문은행이 누리던 과점적 지위가 약해짐
- 금융위원회는 2021년 5월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그간 금융 편의성은 제고하였으나 중금리대출 활성화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 공급이 당초 기대에 미달하여 '절반의 성공'에 그친다고 자체 평가¹¹⁾하며, 인터넷전문은행에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확대할 것을 주문함
- 이에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각사 홈페이지 기타공시와 은행연합회 공시¹²⁾를 통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대폭 확대하여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2021년 말까지 20.8%~34.9%까지 확대하고 2023년 말까지 30.0%~44.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11) 혁신적 포용금융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 금융위원회 (2021.5.)
 12) https://www.kfb.or.kr/publicdata/loan_share.php, 은행연합회, '인터넷전문은행 기타공시'

- 하지만, 금리상승 기조와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전체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파이가 커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수는 2개에서 3개로 증가하고 심지어 기존 시중은행이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시도한다는 이야기¹³⁾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과점적 지위는 약해질 수밖에 없음. 이런 과점적 지위의 약화는 잠재적인 성과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표 5〉 각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잔액 기준)

구분	'21.3월 말	'21.6월 말	'21.9월 말	'21.12월 말	'22.12월 말	'23.12월 말
케이뱅크	18.2	15.5	13.7	21.5(계획)	25.0(계획)	32.0(계획)
카카오뱅크	10.0	10.6	13.4	20.8(계획)	25.0(계획)	30.0(계획)
토스뱅크	-	-	-	34.9(계획)	42.0(계획)	44.0(계획)

출처: 은행연합회 인터넷전문은행 기타공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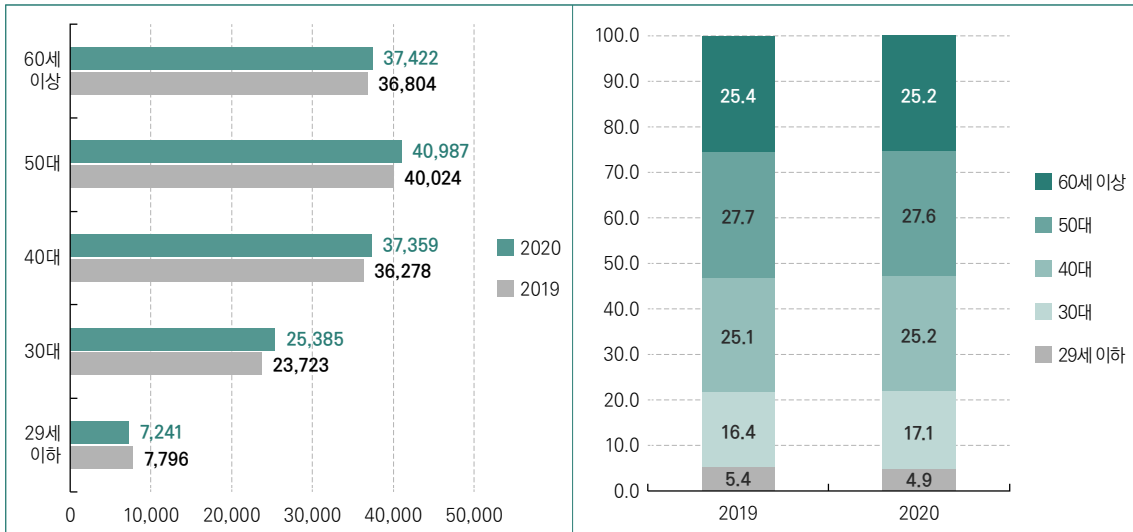
본론 3 : 청소년 및 고령층 고객 포용을 통한 성장 한계 극복 방안

- 청소년 및 고령층 접근이 편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고객 외연 확장 필요
 - 포용금융을 통해 청소년 및 고령층을 인터넷전문은행의 디지털 플랫폼 위로 끌어올 수 있다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음
 - 청소년층이 실명 확인 규제 때문에 비대면 계좌개설이 어려운 점과 고령층이 오프라인 점포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은 구조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 이슈는 단기적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용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
 - (청소년층) 청소년층은 인구구조적으로 5~10년 이내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 고객층이 될 것이며, 청소년기의 금융 습관은 락인효과(Lock-in effect)¹⁴⁾로 미래 장기고객을 확보하게 해줌
 - (고령층) 60대 이상 인구가 보유한 순자산은 평균 37,422만 원으로 5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인터넷전문은행 활용도가 높은 30대 집단보다 47.4% 이상 높음. 따라서, 60세 이상 고령층 고객을 통한 수신 잔고 확보 등 즉각적인 은행의 수익용 자산 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역모기지 및 연금 등 고령층에 특화된 수익사업도 가능¹⁵⁾함

13) <https://www.ajunews.com/view/20211230134341857>, 아주경제, "금융지주 '제4인터넷은행' 나오나...내년 초 최종 결론" (2021.12.30.)

14)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이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려 하지 않고 기존 재화나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을 뜻함. 대표적인 예로 다른 모바일 메시지가 등장하여도 고객을 좀처럼 뺏기지 않는 카카오톡을 들 수 있음

[자료 3] 연령대별 순자산



출처: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단위 : 만원, %

- 청소년 및 고령층 대상 포용금융 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지배구조적 추진 동력 확보 필요
 - 청소년 및 고령층 대상 포용금융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 및 전략수립 - 이사회 감독 - 실행 및 진단 - 정보공개 및 소통으로 이뤄지는 전체적인 지배구조의 안착이 필요함. 어느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더 중요할 수 없음. 한편,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과제를 CEO가 제시하고 추진한다는 점을 생각해보았을 때 CEO의 장기적인 이해관계와 기업의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은 한가지 대표적인 지배구조적 장치라고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청소년 및 고령층 대상 포용금융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므로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다각적인 지배구조 요소 중 하나로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에서 경영진의 장기 성과보수 평가 성과지표 중 청소년 및 고령층 고객 확보율을 포함시키는 등 지배구조적인 조치가 필요함
 - 또한, 보수정책과 장기보수연동에 대한 설계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발간해야 하는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상에 충분한 설명과 함께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과 동법 시행령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에 따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지배구조 및 연차보고서를 은행연합회가 정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공시하여야 함

15) <https://www.funcas.es/wp-content/uploads/2020/09/Banking-Opportunities-in-the-Silver-Economy-DIGITAL.pdf>, "Banking Opportunities in the Silver Economy", (2020.06.)

[자료 4] 은행연합회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일반원칙 (일부발췌)

-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는 금융회사의 최고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에 회사의 **지배 구조 및 보수체계와 관련된 정책 및 그 운영실태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알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연차보고서는 **정보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책 중 회사가 특별히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정책(가치·비전 등)을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대표이사는 연차보고서가 진실되고 충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확인·검토하고 서명한 후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까지** 공시한다

- 은행연합회가 정한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지침은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항목 등에서 장기적인 성과 체계를 관리하는 지배구조적 장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관련하여 지배구조 모범규준도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일치하는 보수정책 수립'과 '보수정책 및 내역 공시', '보수정책 및 산정근거 설명'항목에서 해당 내용을 바람직한 관행으로 제시하고 있음

[자료 5]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지배구조 모범규준 (일부발췌)

- 1.10 이사회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정책 및 관행을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일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그 주요사항과 주요 경영진의 보수는 공시되어야 한다.
-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일치하는 보수정책 수립** 이사회는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정책 및 관행을 주주의 장기적인 이해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그 주요 내용을 공시하고, 임원의 등기·미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주요 경영진의 개별 보수를 공시하여야 한다.
- 보수정책 및 내역 공시** 기업은 실지급 보수금액, 실지급 대상 인원, 주요 경영진의 보수 내역과 보수 산정 기준, 주식매수선택권, 퇴직금 등을 포함하는 **보수정책을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 보수정책 및 산정근거 설명**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보수정책 및 보수 산정 근거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주주의 참여와 감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론 4 : 청소년 및 고령층 대상 포용금융 실천 방안에 대한 가이드선스와 한계점

- 국내 금융규제당국이 발표한 청소년 및 고령층 대상 포용금융 도입 가이드선스 현황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2022 업무계획 등에서 확인되는 포용금융 도입 방향에 대한 가이드선스 중 고령층에 대한 가이드선스는 존재하나, 청소년층 금융소외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음
 - (청소년층) 국내 규제당국의 별도 가이드선스 없음
 - (고령층)
 - 1) 금감원은 2020 업무계획에서 ①'은행 점포폐쇄 확대 및 ATM 축소 등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②'은행권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축·출시 지원을 위한 공통 가이드 마련'을 제시함

2) 금융위는 2020.12.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약 2,7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 계약을 통해 「고령층 친화적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함. 이 연구용역을 통해 고령층 디지털 금융 앱 가이드라인으로 10가지의 준수사항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금융회사들이 따르게 될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축 가이드라인의 정책 기초자료 및 준수사항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6] 고령자 디지털 금융 앱 가이드라인

- 1) 고령자가 쉽게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2) 직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 3) 작업(Task)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설명이 부여되어야 한다.
- 4) 고령자가 원하는 설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5) 고령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 6) 고령자에게 한번에 많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한다.
- 7) 고령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8) 작업(Task)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단계를 최소화 시킨다.
- 9) 현재 수행중인 작업의 진행단계 등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 10) 필요시 고령자의 선택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어야 한다.

출처: 금융위원회, 「고령층 친화적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20.12.

□ 국내 청소년 및 고령층 대상 포용금융 도입 가이드스 한계점

- 청소년층 금융소외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스가 없음
- 고령층의 경우 금융소외 대응에 대한 가이드스가 있으나, 「고령층 친화적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 정책연구 평가결과서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이 생략되는 등 연구내용 및 방법이 실제 연구내용과 불일치하며, 앱 시범설계·운용·피드백 등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할지 확실하지 않음

[자료 7] 「고령층 친화적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고령층 친화적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 박영국
부서/과제담당관	금융소비자정책과 / 과장 송상기	담당공무원	마은 사무관
연구 방식	1. []/의해형 2. []공동연구형 3. []과문합		
연구자 선정방법	1. []/일반경쟁입찰 2. []수의계약		
연구 기간	2020.7.2. - 2020.12.28. (6개월)		
연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 중 고령소비자를 비중이 크게 높았으나, 고령자의 디지털 금융 소외현상이 발생하여 고령층 친화적·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 ○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고령층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적극적인 오프라인 홍보 활용 등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한 디지털 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 ○ 고령층 디지털 금융 앱 가이드라인으로 10가지의 준수사항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금융회사의 고령층 친화적 앱 개발 유도, 사용자 교육 등 정책적인 지원 등 통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금융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목적과 부합함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필요성의 적절성 및 계약 내용의 충실성 : 1. 해외 유사사례, 국내 설문조사, 금융앱 사용자 평가 등을 수행하였으나, 사례에서 밝힌 연구내용 및 방법과 실제 연구내용 불일치하여 수정 필요 - big data 분석 내용은 없으며, 공개데이터 활용을 의뢰한 것이라면 공개데이터 활용이라고 수정할 것을 요청 - 가이드라인에 따라 앱은 시범설계, 운용하고 결과를 적용하여 가이드라인을 수정한다고 밝혔으나, 보고서는 가이드라인 단계까지 만들 필요 있음 2. 본론 목차의 체계 정리 필요 3. 참고문헌 정리 필요 - 본론에 출처를 밝히고 있으나, 현재는 조주문서 번역본과 관련된 문헌과 일부 추천만을 담고 있음 		
평가자	구분	평가위원	과제담당관
평가	성명	모영민위원, 민태원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윤상기
보고	계리일자	시면대체	장소
의견	활성지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	시면대체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2020.12.

- 금융규제당국의 가이드선은 주로 정책입안자나 연구자의 입장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소비자 및 금융기관과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표를 지향하지만, 실제 사용자의 수요(Needs)와는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표 6〉 포용금융 관련 이해관계자별 목표와 니즈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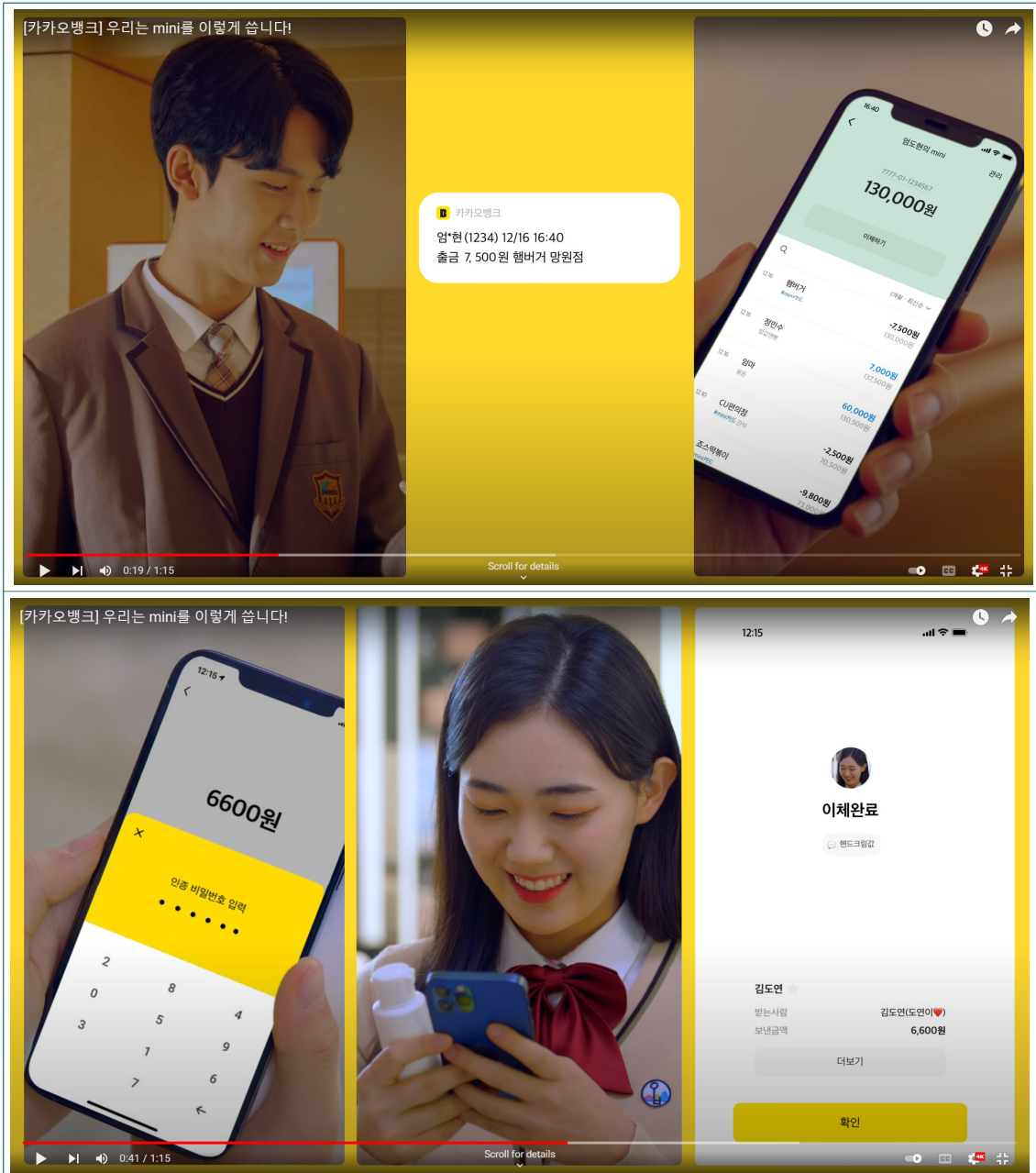
구분	인터넷전문은행	연구자	정책입안자	고객
공동 목표	금융소외문제 해결			
세부적인 니즈 차이	사용자층 확대를 통한 NIM 개선 등 수익성 개선	연구의 타당성 입증	정책의 정당성 입증 및 문제 발생 소지 최소화, 선거권자 우선 고려	사용 편리함
세부적인 니즈 차이에 따른 결과	카카오뱅크mini 등 포용금융 상품 개발	소규모 표본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결과 발표	가이드라인을 통한 TOP-DOWN식 문제해결 시도	사용 불편함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앱 미사용 및 무관심 증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	금융소외층이 편리하게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를 사용			

-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에서 추진 중인 방법은 고령자 전용 큰글씨앱 등 별도 플랫폼 마련임.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될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별도 플랫폼을 마련하는 분리적인 접근보다는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 바람직해 보임. 그렇지 않아도 진입장벽이 높은 금융소외층에게 별도 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위화감을 높이고 접근 장벽을 하나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임

본론 5 : 연령 친화적(Age-friendly) 포용금융 도입 관련 우수사례

- 청소년 금융포용성 강화 - 카카오뱅크mini(카카오뱅크) 및 토스유스카드(토스뱅크)
 - 청소년의 금융포용성을 강화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법의 성공 사례로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뱅크 mini 서비스를 들 수 있음. In-App으로 기존 카카오뱅크 앱과 통합 구현했기 때문에 사용자층(청소년층)에서 위화감이 없으며 별도 앱을 설치하는 등의 추가적인 번거로움이 없음

[자료 8] 카카오뱅크mini 통합적 UI 사용화면



출처: 카카오뱅크 유튜브, 20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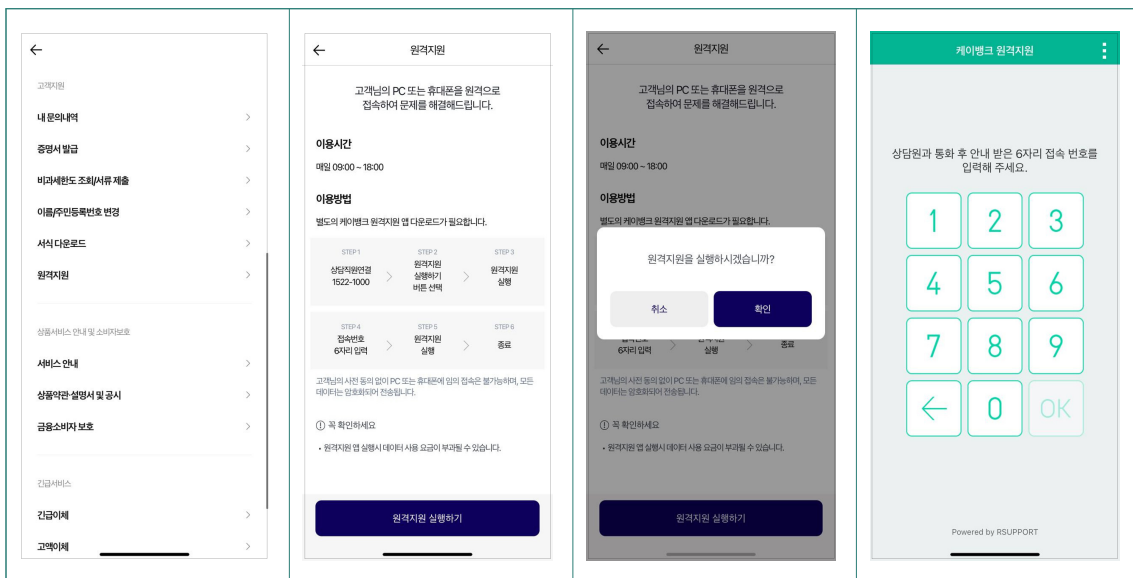
- 특히, 기프트카드로 알려진 선불전자지급 수단(선불카드) 제도를 활용해 간편결제나 ATM 입출금, 계좌이체, 교통카드 기능 등을 기존 카카오뱅크 앱과 동일하게 구현함으로써 실제 사용에서 성인층이 사용하는 체크카드 및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와 별반 다르지 않은 편리성을 고객에게 제공함. 또한, 가족카드나 부모명의로의 카드와는 다르게 minика드의 사용내역은 부모에게 통지되지 않으므로 프라이버시를 추구하는 청소년층의 니즈를 충족시킴

- 안전성 및 범죄예방 측면에서도 카카오뱅크mini의 1일 결제한도는 50만원이며 1개월 이용 한도는 200만원으로 고액 금융사기가 발생할 여지를 차단하였으며, 해외가맹점 및 청소년 유해 업종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함
- 인터넷전문은행 입장에서도 ‘mini 26일 저금’ 등 수신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층 고객이 18세가 넘더라도 사용중인 미니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락인 효과(lock-in)를 누릴 수 있음
- 토스뱅크도 2021년 말 ‘토스유스카드’라는 유사한 경쟁 서비스를 시작하며 청소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시장 내에 확대되고 있음. 특히, 보호자의 동의 및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칠 경우 만 7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다소 제한적이지만 더 넓은 연령대의 청소년 고객까지 금융 서비스를 확대되는 중임
- 이러한 청소년 금융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청소년의 금융 서비스 이용이 모든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가능하지 않으며, 특히 14세 미만 청소년은 여전히 가입이 완전하게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므로 기존 인터넷전문은행과 향후 인가될 제4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사고 및 범죄악용을 방지하는 가운데 청소년 금융서비스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고령층 원격지원 서비스 (케이뱅크)

- 앱 내에 원격지원 버튼을 누르면 별도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며 고객의 동의를 있을 경우 원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원격지원 서비스와 동시에 상담직원의 전화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고령층의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 사용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자료 9] 케이뱅크 원격지원 서비스 UI 사용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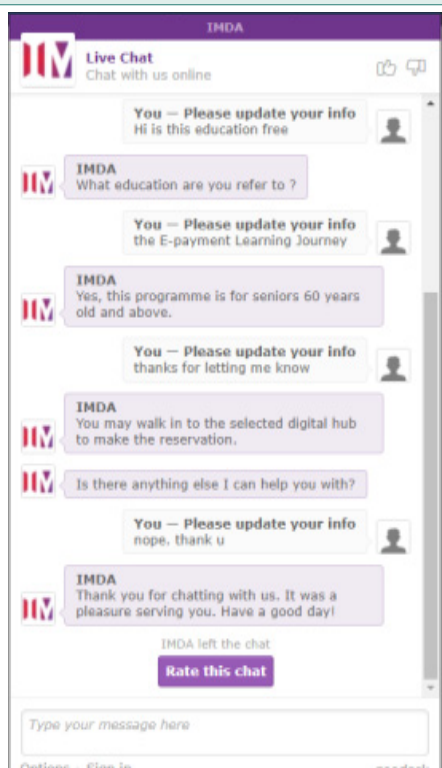


- 또한, 안전성 및 범죄발생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이체 등 금융거래에 대한 원격 조작용은 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앱 사용에 관한 내용을 원격지원 증인
- 유사한 서비스를 토스뱅크가 제공 중이었으나 금융정보 보안을 사유로 일반적인 앱 사용 안내를 포함한 모든 원격지원 서비스를 종료하고 유선 상담만 제공 중임
- ※ 카카오펁크와 토스뱅크의 경우 각각 고령자 전용 전화상담과 통합 전화상담을 통해 고령층 상담 서비스 제공 중

□ 고령층 디지털금융 교육 - SG:DIGITAL (싱가포르 정부)

- 싱가포르 정부는 3단계로 나누어 고령층 대상 디지털 교육 서비스를 제공¹⁶⁾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고령층이 전자지불과 디지털뱅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히, 금융교육뿐만 아니라 이메일, SNS, ZOOM, 의료기관 온라인 예약, 간편결제, 배달앱, 정부 행정서비스 포털 사용 교육법, 금융사기 예방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고령층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

[자료 10] 싱가포르 정부 고령층 디지털금융교육 사이트(SG:DIGITAL) 자료

<p style="text-align: center;">고령층 디지털 교육 3단계 목적</p>  <p style="text-align: center;">지역별로 제공하는 오프라인 무료교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Hub</th> <th>Address</th> <th>Days</th> <th>Time</th> </tr> </thead> <tbody> <tr> <td>Marine Parade</td> <td>10000/0000</td> <td>Mon - Sat</td> <td>10:00 - 12:00</td> </tr> <tr> <td>Marine Parade</td> <td>10000/0000</td> <td>Mon - Sat</td> <td>13:00 - 15:00</td> </tr> <tr> <td>Marine Parade</td> <td>10000/0000</td> <td>Mon - Sat</td> <td>16:00 - 18:00</td> </tr> <tr> <td>Marine Parade</td> <td>10000/0000</td> <td>Mon - Sat</td> <td>19:00 - 21:00</td> </tr> <tr> <td>Marine Parade</td> <td>10000/0000</td> <td>Mon - Sat</td> <td>22:00 - 00:00</td> </tr> <tr> <td>Marine Parade</td> <td>10000/0000</td> <td>Mon - Sat</td> <td>01:00 - 03:00</td> </tr> <tr> <td>Marine Parade</td> <td>10000/0000</td> <td>Mon - Sat</td> <td>04:00 - 06:00</td> </tr> <tr> <td>Marine Parade</td> <td>10000/0000</td> <td>Mon - Sat</td> <td>07:00 - 09:00</td> </tr> <tr> <td>Marine Parade</td> <td>10000/0000</td> <td>Mon - Sat</td> <td>10:00 - 12:00</td> </tr> <tr> <td>Marine Parade</td> <td>10000/0000</td> <td>Mon - Sat</td> <td>13:00 - 15:00</td> </tr> <tr> <td>Marine Parade</td> <td>10000/0000</td> <td>Mon - Sat</td> <td>16:00 - 18:00</td> </tr> <tr> <td>Marine Parade</td> <td>10000/0000</td> <td>Mon - Sat</td> <td>19:00 - 21:00</td> </tr> <tr> <td>Marine Parade</td> <td>10000/0000</td> <td>Mon - Sat</td> <td>22:00 - 00:00</td> </tr> <tr> <td>Marine Parade</td> <td>10000/0000</td> <td>Mon - Sat</td> <td>01:00 - 03:00</td> </tr> <tr> <td>Marine Parade</td> <td>10000/0000</td> <td>Mon - Sat</td> <td>04:00 - 06:00</td> </tr> <tr> <td>Marine Parade</td> <td>10000/0000</td> <td>Mon - Sat</td> <td>07:00 - 09:00</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을 통한 66세 노인의 인터넷뱅킹 활용 사례</p>  <p>What are some of the apps you use frequently? WhatsApp is the communication tool I use. I'm also on social media apps like Facebook and Instagram.</p>	Hub	Address	Days	Time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10:00 - 12: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13:00 - 15: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16:00 - 18: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19:00 - 21: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22:00 - 00: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01:00 - 03: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04:00 - 06: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07:00 - 09: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10:00 - 12: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13:00 - 15: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16:00 - 18: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19:00 - 21: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22:00 - 00: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01:00 - 03: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04:00 - 06: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07:00 - 09:00	<p style="text-align: center;">질의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응답해주는 채널</p>  <p>IMDA Live Chat Chat with us online</p> <p>You - Please update your info Hi is this education free</p> <p>IMDA What education are you refer to ?</p> <p>You - Please update your info the E-payment Learning Journey</p> <p>IMDA Yes, this programme is for seniors 60 years old and above.</p> <p>You - Please update your info thanks for letting me know</p> <p>IMDA You may walk in to the selected digital hub to make the reservation.</p> <p>IMDA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help you with?</p> <p>You - Please update your info nope, thank u</p> <p>IMDA Thank you for chatting with us. It was a pleasure serving you. Have a good day!</p> <p>IMDA left the chat Rate this chat</p> <p>Type your message here</p> <p>Options - Sign in zendesk</p>
Hub	Address	Days	Time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10:00 - 12: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13:00 - 15: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16:00 - 18: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19:00 - 21: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22:00 - 00: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01:00 - 03: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04:00 - 06: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07:00 - 09: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10:00 - 12: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13:00 - 15: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16:00 - 18: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19:00 - 21: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22:00 - 00: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01:00 - 03: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04:00 - 06:00																																																																		
Marine Parade	10000/0000	Mon - Sat	07:00 - 09:00																																																																		

16) <https://www.imda.gov.sg/en/seniorsgodigital#pickup-new-skills>

- 다만, 정부 차원의 노력은 각 은행이 처한 상황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각 은행에 맞는 방법으로 고령층의 사용 편의성을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은 특성상 주요주주 중 IT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다수 포진해있으므로 협업을 적극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금융·ICT기술 융합을 촉진하는 주주사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은 인가 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부분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목적 및 취지와 일치함
 - 예를 들어, IT기술을 갖춘 주요주주의 지원을 통해 고령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고령층 전용 큰글씨 실시간 응답 채널을 운영하거나,
 - 혹은 오프라인 영업망이 장점인 보험업 또는 쇼핑·유통업 주주와 합동으로 연금보험 가입, 배달앱, 간편결제 사용법 등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어플 사용법에 관한 고령층 오프라인 사용 교육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음

결론 :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청소년 및 고령층에 대한 포용금융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한 지배구조적 장치 필요

- 청소년층과 고령층 등 금융소외층에 금융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용금융 전략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수익성과 성장성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시도할 가치가 충분함
-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는 청소년 및 고령층 포용금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지배구조적 장치가 필요함. 단기적 외부 규제나 인센티브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구조 등 미래 상황을 토대로 CEO나 이사회 구성 변경과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임
- 이를 위해서 목표 및 전략수립 - 이사회 감독 - 실행 및 진단 - 정보공개 및 소통으로 이뤄지는 전체적인 지배구조의 안착이 필요함. 그 중 한가지 대표적인 장치로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에서 경영진의 장기 성과보수 평가 성과지표 중 청소년 및 고령층 고객 확보율을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을 들 수 있음. 또한, 그 상세 내역 및 성과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의무적으로 발간하여야 하는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지배구조 분석 - 모범규준 중 보수 연관항목

구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	7/12	5/9	파악 불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대표이사가 이사회회장	비상임이사가 이사회회장	대표이사가 이사회회장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운영위원회	파악 불가
보수위원회 구성	전원 사외이사	전원 사외이사	파악 불가
보수위원회 개최 횟수 (2020년)	5회	4회	- (2021년 인가)
사내이사의 개인별 연간보수액 공시	X	△ (일부 이사 보수액 공시)	파악 불가
CEO 및 임원 장기성과급 비중	50% / 3년 이연	40~60% / 3년 이연	파악 불가
보수위원회에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이사 포함 여부	O	O	파악 불가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사외이사의 자기부담금 설정 (20%/1억원)	사외이사의 자기부담금 설정 (20%/1억원)	파악 불가

※ 위 분석은 ESG 평가 모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공개된 자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어 조회되지 않았을 경우 '파악 불가'로 처리되었으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Global News

1. 유럽 집행위원회(EC),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발표

박진하*

- 지난 2월 23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를 발표함¹⁾
 -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구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 밸류체인에 걸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자 본 지침을 발표함.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기업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 경영을 요구하는 시장의 흐름에 부응할 수 있음
 - 일부 EU 회원국은 기업 실사 의무화 법안을 수립하고, 대규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공급망 실사를 진행하였지만, 법적 안정성(legal certainty)이 없었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 제고를 기대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함.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통합된 규범 아래에 전세계에 걸친 효과적인 밸류체인 관리를 위해 본 지침을 발표함
 - 본 지침은 UN 경영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과 OECD 책임경영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를 기반으로 하며, CSRD, SFDR, Taxonomy Regulation, 분쟁광물규제 등 인권 및 환경영향과 관련된 다양한 규범 및 기준들과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어 인권 및 환경영향 관련 실사에 대한 통합적인 지침이라고 볼 수 있음

- 제2조,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²⁾
 - EU 회원국 내 기업
 - (a) 평균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며, 글로벌 연간 순매출액이 1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
 - (b) (a)에 해당되는 기업 외, 평균 2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며, 글로벌 연간 순매출액이 4천만 유로 이상이고, 순 매출의 50%이상이 특정 산업³⁾ 중에서 발생하는 기업
 - EU 회원국 외 기업
 - (a) EU 역내 연 순매출이 1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
 - (b) EU 역내 연 순매출이 4천만 ~ 1억 5천만 유로이며, 순 매출의 50%이상이 특정 산업⁴⁾ 중에서 발생하는 기업

* KCGS 사업본부 ESG평가팀 연구원, 02-6951-3874, jhpark@cgs.or.kr

1) Just and Sustainable Economy: Commission Lays Down Rules for Companies to Respect Human Rights and Environment in Global Value Chains, 2022.02.23

2) 비상근(part-time) 근로자의 수는 상근(full-time)에 준하여 산정함

3) (i) 의류제조업, 의류유통업 등 의류산업 (ii) 농업, 산림, 어업 및 식음료 관련 산업 (iii) 광물 채굴업, 금속,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4) (i) 의류제조업, 의류유통업 등 의류산업 (ii) 농업, 산림, 어업 및 식음료 관련 산업 (iii) 광물 채굴업, 금속,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SME, micro, small or a medium-sized enterprise)은 제외함

□ 제4~11조, 실사 진행

○ 기업은 아래와 같이 전 밸류체인에 걸친 인권 및 환경영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야 함(제4조)

조항	내용	세부사항
제5조	실사 정책화 및 기업 정책으로 통합화	실사에 대한 접근방식(장기적 관점 포함), 행동강령, 행동강령 준수여부 모니터링 방법 및 이행 절차를 포함한 실사 정책을 확립해야 함
제6조	실재/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식별	기업 및 자회사의 사업활동, 확립된 비즈니스 관계에서 발생하거나 잠재되어 있는 인권 및 환경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
제7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방지 및 완화	*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됨(제7조 2항) - 명확한 일정 및 정량/정성적 지표를 포함한 예방적 계획 수립 및 이행 -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행동강령에 따라 예방적 조치 준수를 유도하는 계약상 보증 요구 -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방지를 위한 투자 진행 - 중소기업의 행동강령 준수 및 부정적 영향 예방에 대한 지원
제8조5)	실재하는 부정적 영향 해소	*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됨(제8조 3항) - 피해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 - 이하 제7조 2항과 같음
제9조	이의제기 절차 수립	- 피해자,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 밸류체인과 관련된 시민단체가 실재 또는 잠재적 인권 및 환경 영향에 대한 정당한 우려 (legitimate concerns)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제보자는 기업에 적절한 후속조치 이행과 기업 대표자 면담을 요구할 수 있음
제10조	정기적 모니터링	-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식별, 예방, 완화, 해소 및 최소화의 효과성을 정기적(최소 연 1회 이상)으로 평가/관리/감독해야 함 - 평가 결과에 따라 실사 정책은 보완되어야 함
제11조	대외 커뮤니케이션	EU 법에 따른 공시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은 매년 4월 30일까지 홈페이지에 연차보고서 게시의 방식으로 본 지침이 적용되는 사항을 보고해야 함

□ 그 외의 조항에서는 기후변화를 주요 리스크로 인식하고 파리협약에 준하는 비즈니스 계획 마련을 의무화하는 기후변화 대응(제15조),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제16,17,18조), 위반에 따른 제재(제20조), 민사책임(22조), 이사의 감독의무(제25조) 등 실사 및 실사 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함

5) 조치로도 예방 및 완화가 불가능한 경우, 협력관계에 대해 일시적 중단 또는 심각한 경우 사업관계 종료(제7조 5항, 제8조 6항)

- 국내 기업 중 일부는 직접 제재 대상에 포함되나, 다수의 기업은 공급망 차원에서의 실사 기준 충족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됨. 본 지침안은 EU의회 및 이사회의 승인과 개별 회원국의 법제화의 과정이 필요함. 하지만 일부 회원국은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⁶⁾이며, 투자자의 경우 공급망 내 ESG 이슈에 대한 점검 및 요구를 강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지침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 기업들 또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글로벌 밸류체인 전체를 고려한 공급망 내 환경·사회적 영향의 중요성과 더불어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공급망의 환경·사회적 영향에 대해 식별·측정 후 조치 및 관리과정에 대한 공시까지 포함된 실사가 의무화된다면, 전체 가치사슬의 ESG요소에 대한 계량화 및 관리감독이 가능해지며 경영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6) 프랑스 Duty of Vigilance Law(2017); 네덜란드 Child Labor Due Diligence Act(2019); 독일 Act on Corporate Due Diligence in Supply Chains(2021) 등

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관련 공시 강화 및 표준안 발표

홍유정*

- 지난 3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리스크 및 대응에 대한 정보 공시를 요구하는 ‘기후 관련 공시 강화 및 표준안(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을 발표함¹⁾.
- (배경) 단편적이고 비일관적인 기후 관련 공시 관행을 개편하고 기후 관련 리스크 및 대응책에 관한 공시 정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함.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의사결정과 상장기업의 효율적 공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표준안에 따른 주요 공시 내용
 - 기후변화 리스크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
 - 기후 관련 리스크가 사업 및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여부
 - 기후 관련 리스크가 기업의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전망에 미친 영향과 가능성
 - 기후 관련 사건(기상 및 기타 자연조건) 및 경과가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항목과 재무제표에 사용된 재무 추정치 및 가정에 미치는 영향
 - 기업의 리스크 관리체제
 - 상장기업 이사회와 경영진의 기후 관련 리스크 관리·감독
 - 기후 관련 리스크의 파악·평가·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및 시스템
 - 물리적 및 이행 리스크와 관련 지표를 포함한 기후 리스크 관리 전략·계획
 - 기후 리스크 비즈니스 전략의 탄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시나리오와 지표, 가정, 분석적 선택 및 예상되는 주요 재무 영향을 설명해야 함.
 - 기업의 내부 탄소 가격 제도과 국제 온실가스(Global Greenhouse Gas, GHG) 배출량
 - 내부 탄소 가격(Internal Carbon Pricing) 활용 여부 및 가격 설정 방법
 - 직접 GHG 배출량(Scope 1)과 간접 GHG 배출량²⁾(Scope 2)의 각각의 값과 합계를 공개해야 하며, 탄소 상쇄(Carbon Offset)³⁾를 포함하지 않는 값과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intensity)⁴⁾ 측면에서 정보를 공시(경제적 가치 또는 생산 단위당으로 표기)
 - 기업의 가치사슬(Scope 3)의 전방 및 후방 활동으로부터의 간접 배출량 또는 Scope 3의

* KCGS 사업본부 ESG 사업팀 연구원, 02-6951-3873, ddatg0808@cgs.or.kr

1) SEC Proposes Rules to Enhance and Standardize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2022.03.21.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2-46>

2) 기업이 구입한 전기 및 기타 형태의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GHG 배출량

3) 추가적인 노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행위

4) 온실가스 원단위(GHG intensity)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경제활동 지표로 나눈 값을 의미함.

배출을 포함한 GHG 배출 목표를 탄소 상쇄를 포함하지 않는 값과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측면에서 정보를 공시(경제적 가치 또는 생산 단위당으로 표기)

-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목표 및 이행 계획 및 세부 정보 공표
 - 기후 관련 목표, 활동 및 배출 범위, 목표 달성 기간과 중간 목표 등
 - 목표의 달성 여부와 활동 관련 자료를 회계연도마다 갱신
 - 탄소 상쇄 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가 사용된 경우, 탄소 상쇄 또는 REC에 대한 특정 정보(REC가 나타내는 탄소 감소량 또는 재생에너지 생성량 포함)를 나타낼 수 있음.
- 기후 관련 공시를 등록 명세서 및 10-K 보고서 등과 같은 연차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상장 대기업, 중기업의 경우 최소 Scope 1, 2의 배출량을 포함하는 내용을 독립 법인으로부터 증명받아야 함.

□ 단계적 도입 기간⁵⁾

- 기업 유형별 단계적 도입 기간 및 Scope 3 배출량 공개에 대한 추가 단계적 도입 기간은 [표 1]과 같음.
 - 소규모기업의 경우 Scope 3 배출량 공개가 면제됨⁶⁾.
- 상장 대기업 및 중기업에 필요한 보증 요건 및 보증 수준 단계는 [표 2]와 같음.

〈표 1〉 기업 유형에 따른 단계적 도입 기간

기업 유형	공시 준수 기간	
	모든 공시 내용 (단, Scope 3 제외)	GHG 배출량: Scope 3 및 관련 원단위(intensity)
상장 대기업 (Large Accelerated Filer)	2023 회계연도(2024년 제출)	2024 회계연도(2025년 제출)
상장 중소기업 (Accelerated Filer & Non-Accelerated Filer)	2024 회계연도(2025년 제출)	2025 회계연도(2026년 제출)
소규모기업 (SRC)	2025 회계연도(2026년 제출)	면제

〈표 2〉 상장 대기업 및 중기업에 필요한 보증 요건 및 보증 수준 단계

기업 유형	Scopes 1 & 2 공시 준수 기간	Limited Assurance	Reasonable Assurance
상장 대기업 (Large Accelerated Filer)	2023 회계연도 (2024년 제출)	2024 회계연도 (2025년 제출)	2026 회계연도 (2027년 제출)
상장 중소기업 (Accelerated Filer)	2024 회계연도 (2025년 제출)	2025 회계연도 (2026년 제출)	2027 회계연도 (2028년 제출)

5) 단계적 도입 기간은 표준안이 2022년 12월 시행일에 채택되고 대상 기업이 12월 31일의 회계연도 말일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6) 「민간증권소송개혁법」에 근거하여 공개 전망이 빛나가도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 세이프 하버 룰(Safe Harbor Rule)을 적용함.

